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 주요정보

대표번호	홈페이지
1533-6100	신분평더웨이시티.com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청주시 거주자	충청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접수	계약 체결
일정	2025.07.11.(금)	2025.07.21.(월)	2025.07.22.(화)	2025.07.23.(수)	2025.07.29.(화)	2025.08.01.(금) ~2025.08.08.(금)	2025.08.11.(월) ~2025.08.13.(수)

2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주택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신분평더웨이시티.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주택공급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11.**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7.21.(월)**	**2025.07.22.(화)**	**2025.07.23.(수)**	**2025.07.29.(화)**	**2025.08.01.(금) ~2025.08.08.(금)**	**2025.08.11.(월) ~2025.08.13.(수)**
방법	▪ PC/모바일 :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 견본주택	▪ PC/모바일 :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22995호(2025.6.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장성지구 A1블럭(장성동 20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29층 12개동 총 1,448세대(임대 793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655세대
[특별공급 323세대(기관추천 58세대, 다자녀가구 63세대, 신혼부부 135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5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85	01	**075.9546A**	75A	75.9546	28.4840	104.4386	55.7694	160.2080	45.8412	**114**	11	11	26	3	10	61	53	6
	02	**075.9216B**	75B	75.9216	28.5475	104.4691	55.7452	160.2143	45.8213	**61**	6	6	14	1	5	32	29	3
	03	**075.9275C**	75C	75.9275	29.1388	105.0663	55.7495	160.8158	45.8249	**59**	5	5	13	1	5	29	30	3
	04	**084.8267A**	84A	84.8267	32.0211	116.8478	62.2838	179.1316	51.1959	**221**	22	22	50	6	19	119	102	8
	05	**084.9571B**	84B	84.9571	31.2288	116.1859	62.3795	178.5654	51.2746	**142**	14	14	32	4	12	76	66	5
	06	**112.8901A**	112A	112.8901	39.7948	152.6849	82.8892	235.5741	68.1331	**58**	-	5	-	1	-	6	52	2
합계										**655**	58	63	135	16	51	323	332	27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075.9546A	075.9216B	075.9275C	084.8267A	084.9571B	112.8901A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3	1	1	6	4	-	15
	국가유공자	1	1	1	2	1	-	6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2	1	-	6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1	4	3	-	11
	중소기업 근로자	3	1	1	6	4	-	15
	의사상자	1	1	-	2	1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	6	5	22	14	5	63
신혼부부 특별공급		26	14	13	50	32	-	13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1	1	6	4	1	16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5	5	19	12	-	51
합 계		61	32	29	119	76	6	323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025.11.28	2026.04.30	2026.09.30	2027.03.31	2027.07.30	2027.11.30	
75A	1층	3	122,610,000	279,390,000	-	402,000,000	**10,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2층	3	123,525,000	281,475,000	-	405,000,000	**10,000,000**	3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3층	6	126,575,000	288,425,000	-	415,000,000	**10,000,000**	3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4층	6	130,540,000	297,460,000	-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5층이상	96	131,760,000	300,240,000	-	432,000,000	**10,000,000**	3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75B	1층	3	121,390,000	276,610,000	-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2층	3	122,305,000	278,695,000	-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3층	3	125,355,000	285,645,000	-	411,000,000	**10,000,000**	3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4층	3	129,015,000	293,985,000	-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5층이상	49	130,540,000	297,460,000	-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75C	1층	3	121,390,000	276,610,000	-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2층	3	122,305,000	278,695,000	-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3층	3	125,355,000	285,645,000	-	411,000,000	**10,000,000**	3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4층	3	129,015,000	293,985,000	-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5층이상	47	130,540,000	297,460,000	-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84A	1층	4	133,895,000	305,105,000	-	439,000,000	**10,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2층	6	136,030,000	309,970,000	-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3층	8	139,995,000	319,005,000	-	459,000,000	**10,000,000**	3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4층	8	143,045,000	325,955,000	-	469,000,000	**10,000,000**	3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5층이상	195	146,095,000	332,905,000	-	479,000,000	**10,000,000**	3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84B	1층	5	132,980,000	303,020,000	-	436,000,000	**10,000,000**	3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2층	5	135,115,000	307,885,000	-	443,000,000	**10,000,000**	3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3층	5	139,080,000	316,920,000	-	456,000,000	**10,000,000**	3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36,800,000
	4층	5	142,130,000	323,870,000	-	466,000,000	**10,000,000**	3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39,800,000
	5층이상	122	145,180,000	330,820,000	-	476,000,000	**10,000,000**	3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42,800,000
112A	1층	2	172,804,400	391,996,000	39,199,600	604,000,000	**10,000,000**	5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81,200,000
	2층	2	175,951,500	399,135,000	39,913,500	615,000,000	**10,000,000**	5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84,500,000
	3층	2	179,670,800	407,572,000	40,757,200	628,000,000	**10,000,000**	5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4층	2	183,390,100	416,009,000	41,600,900	641,000,000	**10,000,000**	5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5층이상	50	187,109,400	424,446,000	42,444,600	654,000,000	**10,000,000**	5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96,200,000

유의사항

-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이는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공급계약 시 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공급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체요율은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산정)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공급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공급 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근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공급금액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5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조항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생애최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주택공급 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2. 공통유의사항'(2페이지) 참조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및 충청북도)</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td></tr>
</table>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8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②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기관
장애인	충청북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중소기업근로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의사상자	충청북도청 복지정책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3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분

②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태아,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분

③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①거주지역 ▶ ②배점기준표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주택공급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 ▶ ⑤추첨

- '①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②배점기준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 미성년 자녀수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2)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2명	10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주택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계	100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세대수의 23% 범위) : **135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분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③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④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거주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 아래 단계별 당첨자 선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단계	소득구분	내용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④미성년 자녀수'▶'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의 경우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및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없음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일반공급 및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 없음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배우자 소득 없음	14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 보유 기준

<table>
<tr><th>구분</th><th>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축물
+토지)</td><td rowspan="2">3억
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지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분

②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분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④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①거주지역 ▶ ②가점산정 기준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④추첨

- '①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②가점산정기준' : '가점제 적용기준'(19페이지)을 바탕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 산정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 무주택기간	32	만30세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2) 부양가족수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세대수의 9% 범위) : 51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분
②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④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⑥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⑦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단,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①소득구분 ▶ ②거주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 아래 단계별 당첨자 선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자녀기준

- 임신·입양의 경우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및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및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 보유 기준

<table>
<tr><th>구분</th><th>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축물
+토지)</td><td rowspan="2">3억
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지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6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

②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청약통장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및 충청북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1 1순위 가점제	①거주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2 1순위 추첨제	①거주지역 ▶ ②추첨
	3 2순위	①거주지역 ▶ ②추첨

- '①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 '②가점' : '가점제 적용기준'(19페이지)을 바탕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가점 산정기준'(20페이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구분	내용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 무주택기간	32		만30세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2) 부양가족수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확인용→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통 적용 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7 청약 신청 및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청약신청	특별공급	**2025.07.21.(월)** (청약Home : 09:00~17:30/견본주택 : 10:00~14:00)	■ 청약Home(PC 또는 모바일앱) ■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5.07.22.(화)** (청약Home : 09:00~17:30/은행 : 09:00~16:00)	■ 청약Home(PC 또는 모바일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일반공급 2순위	**2025.07.23.(수)** (청약Home : 09:00~17:30/은행 : 09:00~16:00)	
당첨자발표		**2025.07.29.(화)**	■ 청약Home(PC 또는 모바일앱)

방법 및 절차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청약홈 편의서비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29.(화) ~ 2025.08.0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7.2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정	■ 2025.08.01.(금)~ 2025.08.08.(금) 10:00~17:00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장소	■ 견본주택(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
유의사항	■ 추후 서류 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제출 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
일반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확인용→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창구 방문→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 조회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적격여부 소명 필요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직장가입자만)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 해당직장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 있는 현재 무직자	①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세무서
	2024.01.01.부터 현재까지 무직자	①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 및 휴직 유형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자산증빙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단독·공동주택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조회/발급→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조회결과 인쇄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결과 인쇄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이택스 (etax.seoul.go.kr) ▪ 위택스 (www.wetax.co.kr)
	해당자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발급→부동산→소유현황 열람→조회결과 인쇄·제출 -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 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아래 ①, ②, ③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상기 공통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적용예 : 2011,2013,2015,2018,2020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9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계약 체결	2025.08.11.(월) ~ 08.13.(수) (3일간, 10:00 ~ 17:00)	견본주택(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구비사항

구분	해당구분		구비사항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발급분,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사업주체와 균등 부담)
대리인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상기 유의사항 참고)
	○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양식 견본주택 비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의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서명 계약 시 대리 접수 불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사업주체와 각각 50%씩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부담분의 수입인지는 입주시 별도 교부 예정입니다.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공급대금	하나은행	776-910043-76504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주소 또는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반드시 당사(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①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납부세액	계약자	사업주체	비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만원	1만원	▪ 계약자, 사업주체 각각 50% 납부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2만원	2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3만5천원	3만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5천원	7만5천원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분양권 전매 등 해당 없음)에 한해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②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지를 구입 후 출력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한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한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부적격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③ 위축지역 :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급대금의 60%(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공급대금의 10%(계약금 1차, 2차)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대출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제48조의2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방문 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 입주예정일 : 2028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완납, 소유권이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자의 관리 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그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입주자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제11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혼합주택단지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단지의 관리에 관한 일부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맘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분양권 전매**

- 본 아파트는 별도의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로,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 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매 당사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신고는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의 미납금액이 있거나 잔금의 90% 이상 납부 시 취득으로 간주되어 분양권 전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증여, 상속 포함) 절차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였습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5-101-0003200호	₩221,074,7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 약관 주요 내용**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계약서에 사업주체(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

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75A	16,200,000	1,620,000	14,580,000
75B	19,800,000	1,980,000	17,820,000
75C	19,500,000	1,950,000	17,550,000
84A	18,500,000	1,850,000	16,650,000
84B	21,500,000	2,150,000	19,350,000
112A	25,400,000	2,540,000	22,86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실외기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발코니 확장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추가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스타일링등)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 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10%	1차(10%)	2차(10%)	3차(10%)	60%	
					계약시	2025.11.28	2026.09.30	2027.07.30	입주시	
인테리어	친환경 무기질 도료	[안방 +드레스룸 +침실1 +침실2] 벽면	75A	4,050,000	405,000	405,000	405,000	405,000	2,430,000	▪ 미선택시 : 없음
			75B	3,240,000	324,000	324,000	324,000	324,000	1,944,000	
			75C	2,970,000	297,000	297,000	297,000	297,000	1,782,000	
			84A	3,970,000	397,000	397,000	397,000	397,000	2,382,000	
			84B	3,510,000	351,000	351,000	351,000	351,000	2,106,000	
			112A	4,820,000	482,000	482,000	482,000	482,000	2,892,000	
	바닥 스타일링	거실 +복도 +주방	75A	3,980,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2,388,000	▪ LX 에디톤 ▪ 미선택시 : 강마루
			75B	3,550,000	355,000	355,000	355,000	355,000	2,130,000	
			75C	3,980,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2,388,000	
			84A	4,120,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2,472,000	
			84B	3,840,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2,304,000	
			112A	5,120,000	512,000	512,000	512,000	512,000	3,072,000	
	벽면 스타일링	거실 +복도	75A	3,620,000	362,000	362,000	362,000	362,000	2,172,000	▪ 소파뒷벽 아트월(포세린타일) +복도 아트월(포세린타일) +복도 FIX 판넬 ▪ 미선택시 : 벽지
			75B	4,060,000	406,000	406,000	406,000	406,000	2,436,000	
			75C	3,620,000	362,000	362,000	362,000	362,000	2,172,000	
			84A	3,770,000	377,000	377,000	377,000	377,000	2,262,000	
			112A	4,050,000	405,000	405,000	405,000	405,000	2,430,000	
		거실	84B	2,180,000	218,000	218,000	218,000	218,000	1,308,000	▪ 소파뒷벽 아트월(포세린타일) ▪ 미선택시 : 벽지
	조명 스타일링 1-1	거실 +복도	75A	3,510,000	351,000	351,000	351,000	351,000	2,106,000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거실 아트월 리니어 조명 +복도 아트월 리니어 조명 ▪ 미선택시 : 거실 직부등
			84A	3,510,000	351,000	351,000	351,000	351,000	2,106,000	
			112A	4,160,000	416,000	416,000	416,000	416,000	2,496,000	
	조명 스타일링 1-2	주방	75A	3,120,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1,872,000	▪ 주방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식탁 마그네틱 조명+라인보드 ▪ '주방 수납 특화' 선택시 가능 (75A,84A) ▪ 미선택시 : 식탁 직부등
			84A	4,250,000	425,000	425,000	425,000	425,000	2,550,000	
			112A	4,870,000	487,000	487,000	487,000	487,000	2,922,000	
	조명 스타일링 2	거실+주방	75B	4,420,000	442,000	442,000	442,000	442,000	2,652,000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거실 아트월 리니어 조명 +식탁 마그네틱 조명+라인보드 +복도 아트월 리니어 조명(75B,C) ▪ 미선택시 : 거실,식탁 직부등
			75C	5,040,000	504,000	504,000	504,000	504,000	3,024,000	
			84B	4,670,000	467,000	467,000	467,000	467,000	2,802,000	
	주방 스타일링	주방	75A	4,670,000	467,000	467,000	467,000	467,000	2,802,000	▪ 주방 벽(세라믹 타일) +주방 상판(세라믹 타일) +상부장조명 +팝업콘센트 ▪ 84A-1 : "ㄷ"자 기본형 주방 선택 시 ▪ 84A-2 : "ㅡ"자 대면형 주방 선택 시 (견본주택 시공, 주방장식장 스타일링 옵션 선택시) ▪ 미선택시 : 벽(타일) /상판(엔지니어드스톤)
			75B	4,410,000	441,000	441,000	441,000	441,000	2,646,000	
			75C	3,910,000	391,000	391,000	391,000	391,000	2,346,000	
			84B	4,920,000	492,000	492,000	492,000	492,000	2,952,000	
			112A	5,680,000	568,000	568,000	568,000	568,000	3,408,000	
			84A 1	5,550,000	555,000	555,000	555,000	555,000	3,330,000	
			84A 2	5,040,000	504,000	504,000	504,000	504,000	3,024,000	
	주방 장식장 스타일링	주방 팬트리	75B	6,868,000	686,800	686,800	686,800	686,800	4,120,800	▪ 장식장 고급화 +3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기본 팬트리
			75C	7,070,000	707,000	707,000	707,000	707,000	4,242,000	
			84B	6,565,000	656,500	656,500	656,500	656,500	3,939,000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 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10%	1차(10%)	2차(10%)	3차(10%)	60%	
					계약시	2025.11.28	2026.09.30	2027.07.30	입주시	
인테리어	주방 장식장 스타일링	주방 팬트리	75A	6,464,000	646,400	646,400	646,400	646,400	3,878,400	▪ '주방 수납 특화' 선택시 가능 ▪ 장식장 +3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없음
			84A	5,757,000	575,700	575,700	575,700	575,700	3,454,200	▪ '주방 수납 특화' 선택시 가능 ▪ 장식장 고급화 +3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기본 팬트리
			112A	6,868,000	686,800	686,800	686,800	686,800	4,120,800	▪ 장식장 고급화 +2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기본 팬트리
가구	현관중문	현관	전타입	1,750,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1,050,000	▪ 3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없음
	주방 수납 특화	알파룸	75A	2,040,000	204,000	204,000	204,000	204,000	1,224,000	▪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 미선택시 : 없음
			84A	3,360,000	336,000	336,000	336,000	336,000	2,016,000	▪ 시스템가구 +가구도어 ▪ '주방 장식장 스타일링' 선택시 가능(84A) ▪ 미선택시 : 알파룸(벽지마감)
			112A	3,60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2,160,000	
	복도 팬트리	복도	75B	2,760,000	276,000	276,000	276,000	276,000	1,656,000	▪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 미선택시 : 없음
			84B	2,640,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1,584,000	▪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 미선택시 : 가구도어만 설치
	냉장고장 특화	주방	75A	2,645,000	264,500	264,500	264,500	264,500	1,587,000	▪ 비스포크1도어 전용 냉장고장 + 5단 수납장 ▪ 미선택시 : 기본 냉장고장
			75B,C	2,530,000	253,000	253,000	253,000	253,000	1,518,000	
			84A	2,530,000	253,000	253,000	253,000	253,000	1,518,000	
			84B	2,645,000	264,500	264,500	264,500	264,500	1,587,000	
			112A	2,990,000	299,000	299,000	299,000	299,000	1,794,000	
	고급 주방후드	주방	전타입	8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80,000	▪ 트라이애드 / 블랙,실버 택1
	안방중문	안방 드레스룸	75A	1,870,000	187,000	187,000	187,000	187,000	1,122,000	▪ 3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드레스룸 가구도어
			75C	2,10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260,000	
			84A	1,990,000	199,000	199,000	199,000	199,000	1,194,000	
			112A	1,990,000	199,000	199,000	199,000	199,000	1,194,000	
			75B	840,000	84,000	84,000	84,000	84,000	504,000	▪ 1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드레스룸 가구도어
			84B	840,000	84,000	84,000	84,000	84,000	504,000	
	붙박이장	침실1	75A,C	1,640,000	164,000	164,000	164,000	164,000	984,000	▪ 미선택시 : 없음
			84A,B 112A	2,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00,000	
	침실1 드레스룸	침실1	75B	2,760,000	276,000	276,000	276,000	276,000	1,656,000	▪ 시스템가구+가구도어 ▪ 미선택시 : 없음
	슬라이딩 도어	침실2	84B	2,520,000	252,000	252,000	252,000	252,000	1,512,000	▪ 3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벽체

■ 추가선택품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 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10%	1차(10%)	2차(10%)	3차(10%)	60%	
					계약시	2025.11.28	2026.09.30	2027.07.30	입주시	
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주방	전타입	5,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3,000,000	▪ 삼성전자 비스포크 1도어 ▪ 색상 선택 가능(색상 추후 안내)
	3구 인덕션	주방	전타입	750,000	75,000	75,000	75,000	75,000	450,000	▪ 삼성전자
	3구 하이브리드	주방	전타입	6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60,000	▪ 삼성전자
	전기오븐	주방	전타입	450,000	45,000	45,000	45,000	45,000	270,000	▪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주방	전타입	1,0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 삼성전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 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10%	1차(10%)	2차(10%)	3차(10%)	60%	
					계약시	2025.11.28	2026.09.30	2027.07.30	입주시	
시스템 에어컨 (일반형)	선택1	거실+안방	75A,B,C	3,900,00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2,340,000	▪ 삼성전자 / 2대
		거실+안방 +주방	84A,B	5,100,0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3,060,000	▪ 삼성전자 / 3대
			112A	5,30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3,180,000	
	선택2	[선택1] +침실1+침실2	75A,B,C	6,850,000	685,000	685,000	685,000	685,000	4,110,000	▪ 삼성전자 / 4대
			84A,B	8,10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4,860,000	▪ 삼성전자 / 5대
			112A	8,300,000	830,000	830,000	830,000	830,000	4,980,000	
	선택3	[선택2] +알파룸	75A	7,900,000	790,000	790,000	790,000	790,000	4,740,000	▪ 삼성전자 / 5대
			84A	9,20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5,520,000	▪ 삼성전자 / 6대
			112A	9,700,000	970,000	970,000	970,000	970,000	5,820,000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형)	선택1	거실+안방	75A,B,C	4,300,00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2,580,000	▪ 삼성전자 / 2대
		거실+안방 +주방	84A,B	5,700,000	570,000	570,000	570,000	570,000	3,420,000	▪ 삼성전자 / 3대
			112A	5,900,000	590,000	590,000	590,000	590,000	3,540,000	
	선택2	[선택1] +침실1+침실2	75A,B,C	7,650,000	765,000	765,000	765,000	765,000	4,590,000	▪ 삼성전자 / 4대
			84A,B	9,100,000	910,000	910,000	910,000	910,000	5,460,000	▪ 삼성전자 / 5대
			112A	9,300,000	930,000	930,000	930,000	930,000	5,580,000	
	선택3	[선택2] +알파룸	75A	8,900,000	890,000	890,000	890,000	890,000	5,340,000	▪ 삼성전자 / 5대
			84A	10,40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6,240,000	▪ 삼성전자 / 6대
			112A	10,900,000	1,090,000	1,090,000	1,090,000	1,090,000	6,540,000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일정 및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미확장 시 시공상의 문제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 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방중문'(안방 드레스룸 수동 슬라이딩 도어)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가구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며, 추가선택품목(슬라이딩 도어) 미선택시에는 가구도어가 화장대와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사이에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배관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만 설치되며, 기타 침실 및 알파룸 등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에는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금액은 거실 스탠드,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용 냉매배관을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구성내용에 맞게 '냉장고장'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셔야 냉장고장 및 수납장이 설치되며,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 냉장고장만 제공됩니다.
- '냉장고' 및 '냉장고장'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은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판넬이 부착됩니다.(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일반 주방 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매립호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오븐'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일반 주방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3구 인덕션' 또는 '3구 하이브리드'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3구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하나은행	776-910043-78804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11 기타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확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

구분	사업주체	시공자
상호	(유)에이치엠서빈	제일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23, 5층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법인번호	110114-0260684	135811-0093658

감리관련(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휴먼텍코리아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케이씨엔지니어링	덕원기술단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감리금액	4,300,063,900원	968,730,900원	1,214,468,000원	334,400,000원

설계관련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Ⅶ-0.213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Ⅶ-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건축 부문 설계 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 부문 설계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기준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0.7kW이하 전동지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법」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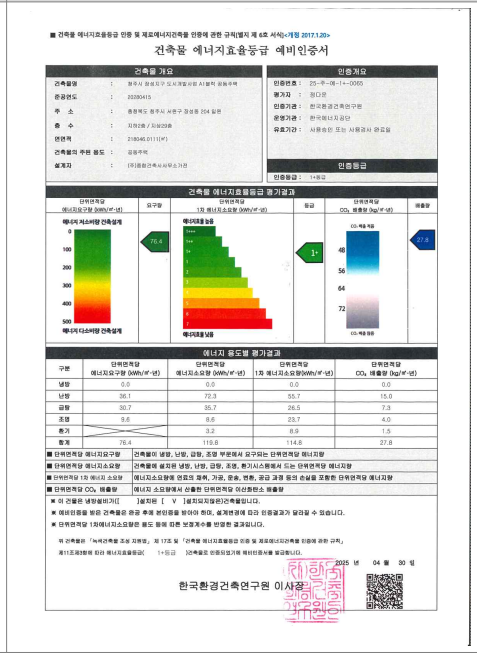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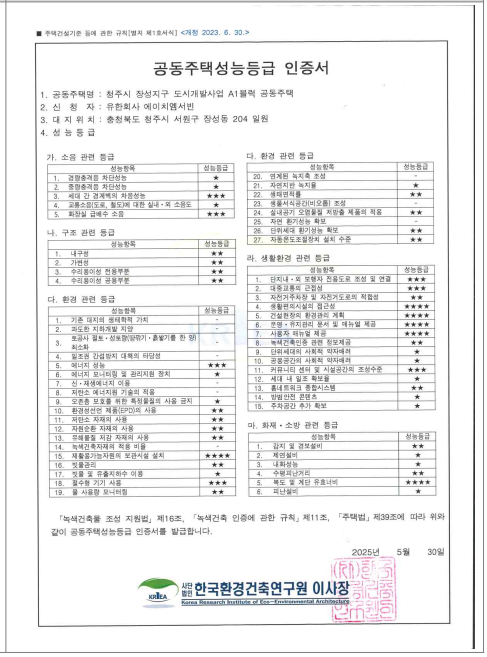

견본주택

구분	내용
위치	견본주택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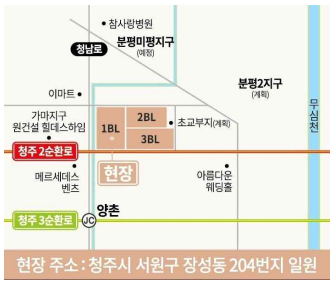 현장 주소 :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204번지 일원
운영	■ 운영시간 : 10:00 ~ 17:00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533-6100 ■ 홈페이지 : 신분평더웨이시티.com

유의사항

■ 기본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본 아파트는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필지 구분 없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단지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4항에 적용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01동 ~ 105동, 112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 임대 세대가 배치되어 있고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외부공간, 부대시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갑"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체와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계약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학교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본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입주자 및 임차인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 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초등학교 개교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불일치에 따른 학생 임시배치는 입주시기로부터 1년전 인근 학교의 학생 배치 현황 추이를 살펴 임시 배치교를 검토할 예정이며, 임시배치 기간 동안 원거리 위치한 초등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에 따라 사업주체는 학교 신설(개교)시 까지 학생통학차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학교의 경우 사업지로부터 도보 통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계약시 이점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단지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와 연결된 보행자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은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단지 외부 레벨차 극복을 위해 경계부에 일부 설계 변경(외부계단, 토목 옹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교목식재가 계획되지 않아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는 관련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ELEV 기계실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실외기 설치 위치와 인접한 세대는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설치위치, 크기, 형태 등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0동 인근에 위치한 보행육교는 A1블럭과 A2블럭을 연계하는 보행육교로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A2블럭 대지 내 교량부분을 제외한 모든부분은 A1블럭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육교 공사는 A2블럭 공사현황에 따라 A1블럭 준공 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발생, 조망권침해 등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위치, 마감재료, 입면디자인,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동간거리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집적소,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건물 외부장식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짐 등의 일조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등),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단지 외부에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위락시설 등의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시설사용자들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규격,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의 형태 및 디자인,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 유입 대책을 위해 창 및 문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 보행진입 개선을 위해 램프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지붕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패널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지하1층), 지상층 및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10동 지붕층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어, PC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LG U+)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태양광 집광판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은 구조 검토에 의하여 높이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옥외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나 시공자에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이나 중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 설계변경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설치 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무관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 옥외 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준공 시 도로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단지 남측(2순환로와 면하는 부분) 내 또는 외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지 하신 후 계약하여야합니다.(단지 내 방음벽 설치시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지하주차장은 최종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2,045대(지하1층 985대, 지하2층 1,060대),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8대, 총 2,053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일반, 가족배려, 확장형, 장애인, 소형 주차면 및 콘센트형, 완속충전형, 급속충전형 전기차 주차면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주차구역의 위치,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 개소 이상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 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주차구획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기둥 및 벽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운전석 및 보조석) 시 간섭이 발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및 보행 동선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트렌치 시공 시 시공 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및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 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가족배려주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니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위세대	■세대 반자높이는 1층세대(필로티 상부세대는 2층으로 본다)가 2.5m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외에 세대의 반자높이는 2.3m로 설계되어 있어 세대 내부 마감(창호, 주방 상부장, 수납장 및 배관 등)의 높이 및 형태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하고자 하는 동과 호실의 반자높이를 분명히 인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류 등(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류 등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의 실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 공간 유효 면적과 천장고, 바닥마감 높이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으니, 입주 후 설치 위치를 실측한 후 가전기기와 집기 등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침실 및 다용도실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우물천장, 가구와 선반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재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추가선택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

구분	내용
	만 제공되며, 이는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미제공됩니다. 별도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벽면 마무리 마감으로 시멘트 몰탈 적용 시 몰탈 바름 총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욕실장, 거울,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는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바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설치되는 뒷벽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거나 폐타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 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방충망의 색상과 제원, 규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발코니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미디움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화장실 천장 또는 벽체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 또는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의 세대통합분전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등의 설치로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별도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대피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며 출입문에 시건 장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피난구 개방시 해당 세대와 하부 세대에 경보 및 관리사무소(방재시스템)에 연동되며 하부 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타입별 상이한 사이즈의 욕실 계획으로 벽,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쪽타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단차 깊이가 세탁기(가전)보다 얕거나 세탁수전 설치로 인하여 세탁기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단차 범위는 세탁기 설치공간 확보, 벽체 및 도어 간섭 개선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세탁단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거실 및 일부 복도 아트월 포세린타일(추가선택품목)의 패턴은 나누기,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벽,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또는 분절 부분의 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사양, 길이, 폭,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내 하드웨어 형태 및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방에 설치되는 파우더장은 방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상부장 또는 주방상부장 내부 일부구간에 SMPS 커버(전기 옵션 등기구 조작함)가 설치됩니다. ■ 가전/가구 선택형에 따라 가구 형태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상부장 상단 또는 일부 내부 구간에 안정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현관문폭 사이즈와 개방각도, 동별 현관 외부 엘리베이터 홀 유효공간이 상이하오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설치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주방가구 상부에 가스배관 또는 벨브의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비내력 벽체는 ALC블럭벽체, 경량벽체,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정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각 단위세대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입주자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난방 온수 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 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통합콘센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설계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설계 용량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 용량 증설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부, 전유부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바닥 배수구, 환기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되며, 세대 현관,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실,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하며, 천장 석고보드 부위와 벽체 석고보드 부위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 바닥재는 강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 전기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견본주택 유의사항

구분	내용
견본주택	■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승인 도서에 따라 시공되며,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별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 스톤, 석재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84A, 84B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 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전자식 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실제 색상, 패턴이 상이할 수 있고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1층세대(필로티 상부세대는 2층으로 본다.) 기준으로 반자높이 2.5m로 시공된 것이며, 그 외에 층의 세대 반자높이는 2.3m로 설계되어 세대 내부 마감(창호, 주방 상부장, 수납장 및 배관 등)의 높이 및 형태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하고자 하는 동과 호실의 반자높이를 분명히 인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홍보물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에 이용된 단지 이미지, 단지모형, 세대모형,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미지에 표현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